



TRT, 8月7日發効

—機能發揮는 美加入後—

商標登錄條約(TRT)이 8月7일부터 發効하였다. 이 TRT는 特許協力條約(PCT)과 同質性的 國際工業所有權條約으로서 지난 2月7日 蘇聯이 5번째로 加入書를 國際事務局인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 寄託함으로써 自動發効하게 된 것이다.

TRT는 1970년에 열린 標章의 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協定國專門家會議에서 美國이 各國 商標를 國際的으로 保護하기 위해서는 新商標條約의 創設이 必要하다고 提唱함으로써 싣트기 시작하였다.

美國의 提唱은 既存마드리드商標保護協定이 유럽의 商標無審査國을 中心으로 締約되었기 때문에 餘他國들의 가입이 不便하다는 理由에서 나온것이다.

마드리드협정은 加盟國의 등록상표를 그대로 보호하려는 制度이며 그 內容인즉

- (1) 本國에 등록되어 있는 商표이어야 한다.
- (2) 本國의 國內官署를 經由하여 出品해야 한다.
- (3) 國際登錄은 5年間本國登錄에 從屬할 것
- (4) 출원은 프랑스語以外的 言語가 認定되지 않는다는 등의 制約이 있다. 이 協정에는 유럽大陸以外의 美·英·日등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美國이 TRT를 제창하게 된 것이다.

TRT는 1973년 11월에서 美國등 50個國이 參加한 外交會議에서 採擇되었으며 同意國中 5個國이 加入 批准書를 寄託하면 5번째 寄託國의 寄託日로부터 6個月後에 自動發効하게 되어 있다. 지난 2월 7일까지 托고, 가봉, 오토볼타, 콩고에 이어 蘇聯이 5번째로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8월 7일에 TRT가 발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TRT는 WIPO國際事務局에 窓口는 마련하게 되었으나 當分間은 開店休業狀態를 免할길이 없

다. 商標自體가 市場競争과 程度를 같이하고 있을 뿐더러 發効國들이 開發途上國과 社會主義國家등 아무도 現時點에서는 그들 국가 商標의 보호가 그리 必要치 않기 때문이다.

TRT가 目的한바 實際業務의 開始는 이를 제창한 美國등 技術先進國들이 가입할때이며 美國은 傳統的인 使用主義國이므로 登錄主義를 採用하고 있는 TRT에 加盟한다면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 商標를 보호해야 한다는 企業들의 疑懼心을 說得하는데 時間이 걸리고 있다.

더욱이 美國이 가입해야만 유럽共同體(EC)國들의 加入與否도 結末이 나게되며 그들은 EC商標法制定에 골몰하고 있으나 蘇聯이 TRT발효에 先手를 쳤기 때문에 不得已 歐美諸國들의 가입도 멀지는 않을 것이다.

推測되는 蘇聯의 가입목적은 TRT의 主導權 掌握과 이를 契機로 對立되어 있는 南北問題에 있어 南 쪽과 接近하여 社會主義國들이 채용하고 있는 發明者 證制度를 개발도상국들에 普及시키려는 政治目的의 底意가 있는 것이다.

한편 日本은 審査機能을 비롯한 그 利用度등을 考慮하여 주저하고 있는 形便이며 餘他國들은 거의 觀望狀態이다.

또한 美國이 가입한다 하더라도 國際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겠느냐에 문제들이 있어 條約이 발효는 되었어도 제구실을 하려면 時間과 迂餘曲折이 豫想된다.

微生物寄託條約 發効

—日本加入으로 8月19일부터—

1977年 4月28日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署名된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微生物寄託國際承認에 관한 條約」이 지난 5月 19日字로 日本이 加入書를 寄託함



國際 動向



으로써 8月 19 日에 發効한다.

同條約은 批准書와 加入書가 5個國이 寄託한지 3個月이 지나면 發効하게 되어 있으며 이 條約에 批准書를 寄託한 國家는 헝가리(1978. 7. 11), 불가리아(1978. 7. 19), 美國(1979. 9. 24), 프랑스(1980. 2. 21) 등이다. 그리고 加入書는 이번 5月 19日에 日本이 寄託하였다.

따라서 부다페스트條約 第16條에(1)에 의거하여 이들 5個國에 1980年 8月 19日字로 同條約이 發効한다. (WIPO 提供)

스트라스부르特許協約 發効

—8月1日 西獨등 8國에—

西獨政府는 지난 4月30日 유럽評議會事務總長에게 發明特許實體法統一에 관한 協約批准書를 寄託하였다.

1963年 11月 27日 스트라스부르에서 調印되었다고 해서 스트라스부르特許協約이라 불리는 이 協約은 同協約 條9條에 의거하여 1980年 8月 1日字로 西獨을 비롯하여 프랑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및 英國등 8個國에 대하여 發効하였다. (EPO 提供)

스페인, UPOV加入書 寄託

—5月18日字 發効—

스페인政府는 지난 4月18日, 國際植物變種保護協約加入書를 UPOV事務局長에게 寄託하였다.

이 協約은 1961年 12月2日字 파리에서 署名되고 1972年 11月 10日 追加條例가 成立됨으로써 改正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協約은 스페인에 대하여 1980年 5月 18日字로 發効하였다 (WIPO 提供)

美·中共間工業所有權協約

—締約된 貿易協定서 判明—

美國은 지난해 7月 몬태일副統領이 中共을 訪問했을 때 美·中共間에는 貿易協定을 맺었으며 그 協定中에는 特許·商標·著作權의 相互保護에 관한 規定이 認定되어 있음이 요즘 밝혀졌다.

이로써 兩國間에는 새로운 獨立協約이 없이도 中共이 工業所有權法을 制定하면 自動的으로 서로 特許出題등이 可能하게 되었다. 美·中共間貿易協定中 第6條에 表示된 工業所有權問題는 다음과 같다.

第6條

① 兩締約國은 兩國의 貿易關係에서 特許, 商標 및 著作權의 有效한 保護의 重要性을 認識한다.

② 兩締約國은 互惠主義原則에 立却하여 어느 한 쪽의 締約國의 法人 또는 自然人이 法律 및 規則에 따라 他方의 締約國에서 商標의 登錄을 出原하거나 專用權의 取得에 合議한다.

③ 兩締約國은 締約國雙方이 法律 및 國際慣習에 他方締約國의 法人 및 自然人에 대하여 自國內에서 認定하고 있는 것과 同等의 特許 및 商標의 保護를 保證하도록 努力하기로 合意한다.

④ 兩締約國은 兩國商社, 會社, 企業 및 貿易機關間에 맺은 契約에서의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한 規定의 施行을 認定하고 또한 促進하며 法律에 따라 그같은 權利의 非公式使用을 包含하여 不正競爭을 制限하기 위한 措施를 講究한다.

⑤ 兩締約國은 締約國官廳이 法律 및 規則에 따라 國際의 慣習에 立却한 他方締約國의 法人 및 自然人에 대하여 自國內에서 認定하고 있는 것과 同等의 著作權保護를 위하여 適切한 措施를 講究하기로 合意한다.



遺傳子代替創製微生物

—美大法院서 特許判決—

美聯邦大法院은 지난 6月 16日자로 遺傳子의 代替技術로서 만들어낸 自然界에 存在하지 않은 微生物의 發明에도 特許權을 許與해야 한다고 判決함으로써 同種産業을 다루는 世界各國에서 話題가 되고 있다.

反響이 큰 나라들이란 대개 技術先進國들이며 그들 나름대로 各種 對應策을 講究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의 對象이 된것은 G.E會社가 8年前에 出題한 슈드모나스屬의 細菌, 즉 石油를 分解하는 菌에 관한 발명이며 美特許商標廳(PTO)이 生物인 微生物自體의 발명은 特許法에 의한 保護對象外라고 하여 이 출원을 拒絶하였으나 GE는 聯邦大法院에 上告하여 勝訴한 바 체크러버티事件이 그것이다.

사건의 줄거리인즉 상고를 接受한 聯邦大法院은 이와는 別途로 상고된 일존會社의 이론과 마지막 사건과 爭點이 類似하다하여 두사건을 모두 關稅特許抗訴法院(CCPA)에 還送하고 再審을 命命하였다. 이때까지의 체크러버티사건에서는 PTO의 審判部審決이 마지막사건의 審決理由를 그대로 引用하고 있었다.

PTO의 主要拒絶理由의 하나는 美特許法101條에서 말하는 『工程, 機械, 製造物 또는 組成物』의 概念에는 生殖하는 微生物은 適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植物特許法이란 特殊法律이 制定되어 있으므로 이는 特許法이 生殖微生物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證據이며 이것까지 특허법으로 保護한다면 식물특허법은 立法의 必要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대해 CCPA에서는 『특허법은 産業發達을 目的으로 한 것이며 立法府의 法律制定當時認識基準을

로서 보호해야할 産業分野를 限定的으로 解釋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遺傳子操作과 같은 新技術도 當然히 특허법의 保護對象이 된다』는 反論이 고았다.

聯邦大法院은 위와같은 CCPA의 判斷을 支持하여 遺傳子의 代替로 創製되는 微生物도 특허되어야한다고 PTO의 결정을 翻駁하였다. 다만 이 슈드모나스菌이 人工的인 創製物이라는 점에서는 PTO와 GE間에 다툼이 없었다.

遺傳子代替創製共同研究센터

—日서 3 個年計劃으로 建設—

遺傳子代替(操作)創製微生物에 대한 發明特許紛爭이 美國에서 一段落되었음과 때를 같이하여 요즘 日本科技廳은 遺傳子操作技術을 確立하기 위한 最初의 共同利用遺傳子工學研究센터를 建設하기로 方針을 굳혔다는 消息이다.

遺傳子代替技術中에서도 가장 높은 安全性이 要求되는 『P4』水準의 施設을 設備함으로써 未踏技術分野에 挑戰하기 위한 人材養成을 第1目標로 하고있는 日本科技廳은 1981年度豫算에 8億원을 計上하는 한편 83年度까지 3個年間に 總 20億원을 投入完工할 計劃이다.

이에앞서 美國은 自然界에 없던 유전자를 지닌 微生物을 만드는데 危險性을 除去하기 위하여 1976年 6월에 遺傳子操作技術에 관한 規制를 制定하여 安全研究體制下에서의 積極的인 研究를 開始하였고 英·佛·西獨등에서도 本格的인 연구에 들어갔다.

日本이 建設하려는 『P4』水準施設은 샤워室, 高壓滅菌裝置등을 갖춘 人類와 전혀 隔離된 實驗施設이며 美·英·佛·西獨등에서는 이미 同一水準의 研究施設을 갖추고 있다.